

[사 건 명] 행심 2018 - 11

학교폭력 관련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조치를 이행하라.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7. 11. 24. 청구인의 ●●●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은 위 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의 청구인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 1호에 의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의 처분을 하였고, 처분 통지서의 조치원인에 청구인이 2017. 11. 7. 학원에서 ●●● 학생에게 언어폭력이나 밀치는 행동을 하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가방을 가지러 가는 것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12. 8. ●●●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의가 있어 2018. 2. 12.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의무이행을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엘리베이터 사건에서 청구인이 전혀 하지도 않는 언어폭력, 밀치는 행동, 가방을 가지러 가는 것을 막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조치원인을 허위의 사실로 명시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피청구인의 처분은 학폭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이다.

나. 청구인은 2017. 11. 24. 피청구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으로부터 필통을 숨기는 폭력을 당한 사실과 청구인이 엘리베이터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안전에 상정이 되는 등의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가 있는 사실을 말하여서 청구인을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와 논의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교폭력을 심의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한 부작위 처분은 위법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해학생으로서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학교폭력사안을 해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호조

치 처분을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미 피해사실을 ■■초등학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2017. 11. 22. ■■초등학교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아님’ 결정을 받아 통보받았고, 그에 따른 불복은 학폭법 제 17조의 2의 재심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조치의 의무가 없는 학교를 상대로 한 청구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과 다른 가해학생들이 피청구인 학교에 재학중인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사안으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내린 보호처분인 바, 이는 행정심판에서 규정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나 부작위가 아니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IV. 의무이행심판의 해당여부

1. 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나. 행정심판법 제 13조, 행정심판법 제5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11. 17. 경 피청구인에게 ●●●으로부터 청구인이 학교

폭력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초등학교로부터 청구인의 ●●●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들은 사실은 있으나, 필통얘기는 듣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11. 24. 피청구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필통숨김을 당하였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가 있음을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적격에 대한 판단

가. 행정심판법 제 13조 3항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 5조 3항은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심판법 제 5조 3항, 행정심판법 제13조 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청구인이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2017. 11. 24 경 피청구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것이 의무이행심판의 전제인 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바,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청구인의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청구인의 진술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을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하여달라는 신청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청구인의 의무이행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자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

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의무이행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